

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'투자연계 멘토링 과제' 시행계획 공고

「2014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」 중 '투자연계 멘토링 과제'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2월 3일
중소기업청장

1. 사업개요

사업목적

- 창업기업에 투자와 멘토링이 연계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R&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,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

지원규모 : 150억원

2. 지원대상

- 중소기업 : 창업 후 7년 이하이고,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(법인만 해당)

구 분	확인 자료
설립연월일(창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(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) *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개인사업자 설립 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(접수마감일 기준)
상시 근로자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* 상시근로자 : 2013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((‘13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)/12) ·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· 등기된 이사는 제외
매출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*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

□ 투자자 :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확인한 개인투자자,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,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캐피탈, 기술지주회사

- 개인투자자 : 적격투자실적[최근 3년간* 2건 이상(총액 4천만원 이상) 또는 1건당 1억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]을 보유한 자
-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 : 클럽회원이 10인 이상이고, 적격투자실적[최근 3년간* 2건 이상(총액 4천만원 이상) 또는 1건당 1억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]을 보유한 회원이 1인 이상인 클럽에 소속된 3인 이상의 투자자
- 개인투자조합 :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2항에 따른 조합
- 벤처캐피탈 : 창투자, 창업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
- 기술지주회사 :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에 해당하는 회사

* 최근 3년 기준은 과제접수마감일 기준

3. 신청자격

-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창업 7년 이하 기업
- 중기청 R&D사업 통합공고일(2014.01.03) 이후 투자계약만 인정

4. 지원금액 및 한도

- 정부출연금 : 총 사업비의 90%이내에서 최대 2억원, 최대 1년 지원
- 투자금 : 투자자는 과제당 5천만원 이상을 신주(보통주, 우선주)로 기업에 투자(과제와 연계된 투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1년간 투자금 회수 금지. 단, 기술개발기간 종료 후 투자자간 거래는 인정)
 - *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인 경우 투자자 1인당 최소투자금액은 5백만원 이상일 것. 단, 멘토의 경우 최소투자금액은 1천만원 이상
- 민간부담금 : 총 사업비의 10% 이상(민간부담금의 20% 이상은 현금)

5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

- 신청기간 : 2014. 2. 10(월) ~ 4.22(화) 18:00까지
- 우편제출 서류는 마감일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함

※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, 가급적 마감일 1~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

□ 신청 방법 : 온라인 및 우편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

- 신청기간 내 중소기업은 투자자의 투자방향서 또는 체결된 투자 계약서, 투자자의 멘토링 계획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제출

※ <http://www.smtech.go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선택 후,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

○ 신청시 구비서류

- ① 온라인제출 서식(<http://www.smtech.go.kr>에 접속 후 내용입력 및 시스템 업로드)
 - ①번~⑫번 서식은 과제접수관련 서류

연번	서식명	비고
①	신청기업 약약서	필수
②	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	"
③	멘토링 계획서	"
④	중소기업 경영현황표	"
⑤	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	"
⑥	투자계약서 또는 투자방향서	"
⑦	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	"
⑧	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정령 서약서	"
⑨	연구시설·장비 구입 계획서	해당시
⑩	연구시설·장비 도입 계획서 ·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인 경우 작성	"
⑪	위탁연구기관(참여기업) 참여의사 확인서	"
⑫	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	"

- ② 우편제출 서식(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)

- ⑬번~⑰번 서식은 투자자 및 멘토 요건심사 관련 필요서류
- ⑱, ⑲번 서식은 대면평가 멘토 평가지표인 창업기업 투자실적 증빙 서류
- 제출처 : 우편번호(137-884),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405호(서초동 1706-5)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연번	서식명	비고(제출 여부)
⑬	적격투자자 확인 신청서	개인투자자, 엔젤클럽, 개인투자조합 (해당시 필수)
⑭	적격공동투자자 확인 신청서	엔젤클럽(해당시 필수)
⑮	투자확인서(적격투자자 실적 확인용)	개인투자자, 엔젤클럽 적격투자자 (해당시 필수)
⑯	이력서(멘토 및 엔젤클럽 적격투자자용)	공통(필수)
⑰	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	기술지주회사
⑱	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(개인투자자용)	개인투자자, 엔젤클럽, 개인투자조합 멘토 (해당시 필수)
⑲	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(VC용)	벤처캐피탈 소속 멘토(해당시 필수)

※ 엔젤클럽에 해당하는 경우 클럽회원명부(필수 기재내용은 세부지침 참고) 및 운영규정 등을 반드시 우편 제출해야 함

- 신청시 구비서류는 사업운영 목적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변경·추가 될 수 있음
- 변동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tech.go.kr)에 접수마감 2주일 전에 공지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(예정일 : 2014.3.31)

6.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

*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요건심사 및 현장조사(4월~5월)

- 신청기업 및 투자자의 자격요건 등 적합성 여부에 대한 요건심사 실시 후 신청기업의 재무현황, 인프라(연구인력, 보유시설) 등 현장조사

□ 대면평가(5월~6월)

-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R&D 능력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고, 투자자에 대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대상과제 추천

□ 지원과제 선정(7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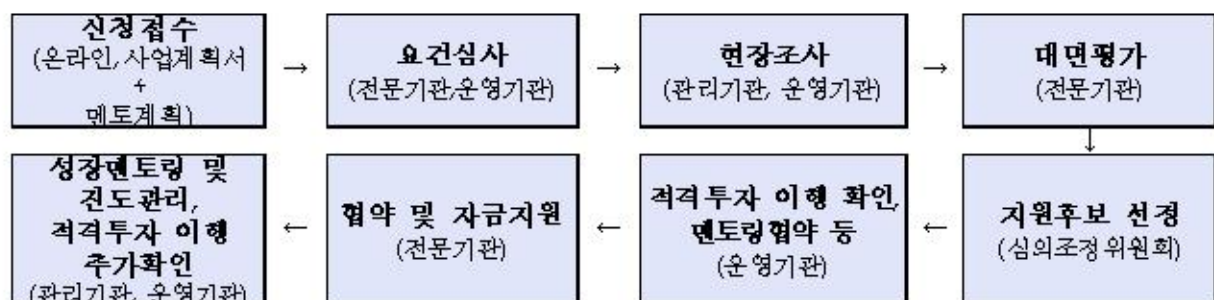
- 심의조정위원회는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하여 확정

종합평점 = 사업계획서 평가점수(멘토링 평가점수 포함)

□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(7월)

- 투자유치 완료기업에 대해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이 과제개발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

<추진절차도>



* (관리기관) 지방중소기업청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운영기관)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7. 기술료 납부

-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'성공'으로 판정될 경우,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%를 납부

* 현금 일시납 원칙,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

8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

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대상에 해당

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

-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신청과제의 내용이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② 기 개발/기 지원 여부
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-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- 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
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주관기관, 협력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
* 의무사항 불이행을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

④ 참여제한 여부

- 주관기관, 협력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·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
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- 주관기관,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*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
㉠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
㉡ 국세·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

- 다만,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하거나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은 예외

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(다만,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)

-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

-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

- 현장조사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

㉣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(다만,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)

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- * 단,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

-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조사에서 재무제표(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)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

⑥ 과제 참여율

-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%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.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

-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

- * 단,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

9. 참여횟수 제한

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

- '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, 참여기업 (산학연사업에 해당)의 자격으로 참여하여
 - 개별 중소기업당 '저변확대' 사업은 총 3회까지, '선택집중'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
- '05년 이후 '선택집중'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'저변확대' 사업에 참여 불가



* 투자연계멘토링 과제는 '저변확대 사업'임

○ 그 외 적용기준

- 제품·공정개선 사업은 '저변확대'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
- '05년부터 '저변확대'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'선택집중'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'선택집중' 사업을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
- '산학연협력기술개발'사업 참여기업은 '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

10. 기타 공지사항

-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(공동개발기관,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)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(다만,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)
- 과제 신청 시 동일 멘토가 참여 할 수 과제는 3개 이하로 제한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 참여기업, 협력기관 대표자 등)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 -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제목,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'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운영요령 및 통합공고문,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

※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 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또는 종합관리시스템에 공지

11. 문의처

담당기관		전 화	문의사항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전문기관)	클센터	1661-1357	신청·접수 및 향후일정 등
한국벤처캐피탈협회 (운영기관)	투자지원팀	02-2156-2131~3	요건심사, 투자이행 확인 및 멘토링협약 등

※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 ·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 ·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ba.go.kr>

12. 사업설명회

-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사업설명회관련 상세일정은 종합관리시스템 (www.smtech.go.kr)에 추후 공지예정(공지예정일 : 2014.02.11)